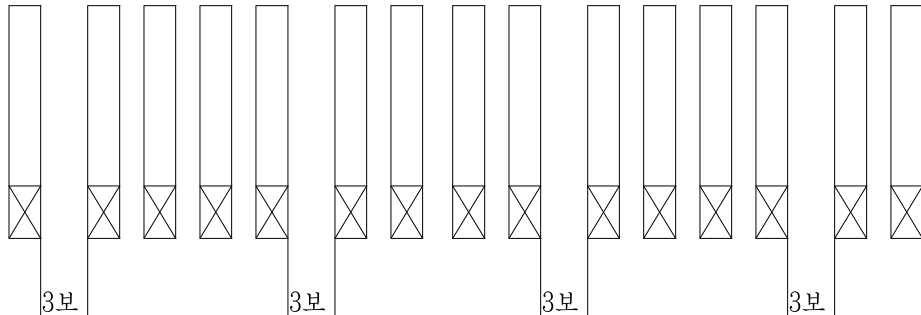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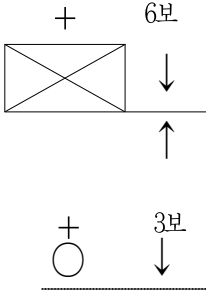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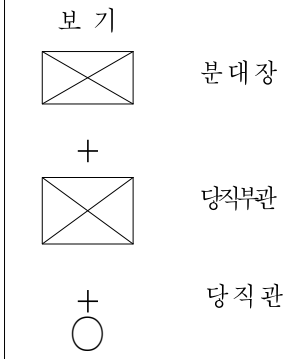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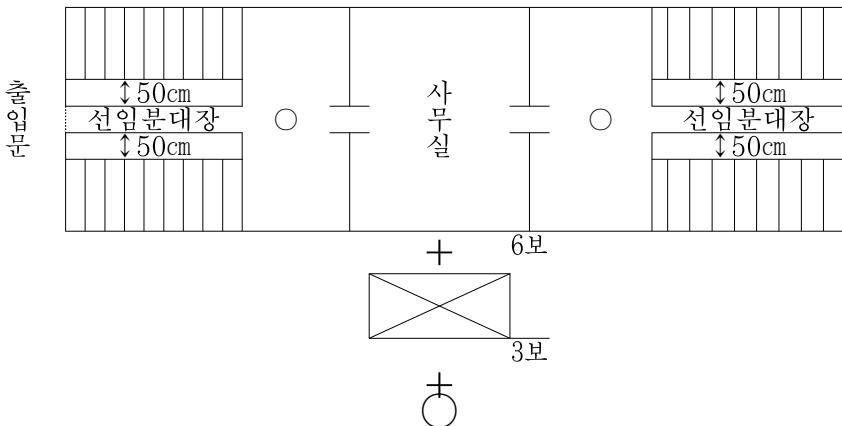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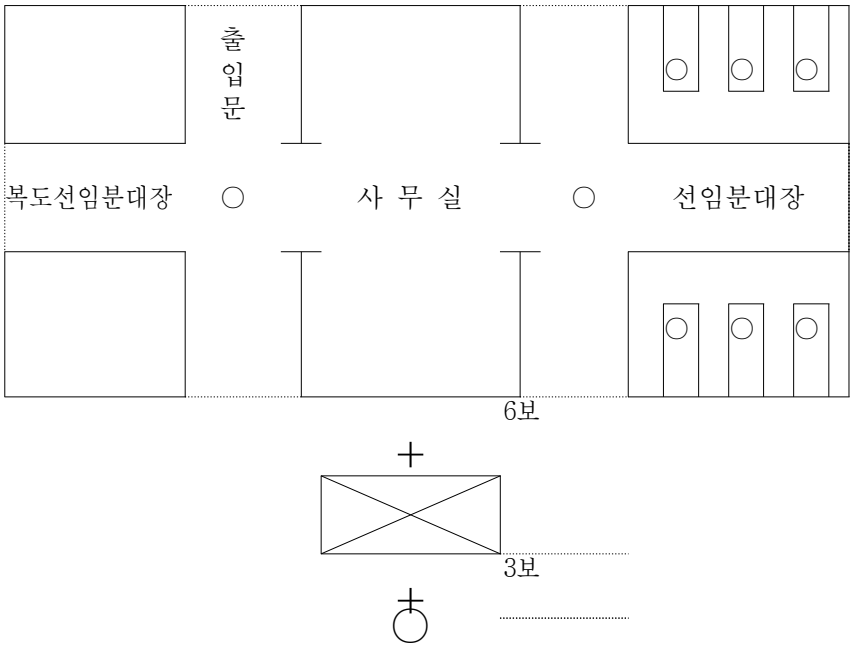


[별표5]

점 호 요 령 (제103조제1항관련)

점 호 구 분	일 조 점 호
점 호 대 형	중대본부 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+ 6보  3보 보 기  분대장 당직부관 당직관
점 호 대 형	· 점호대형은 지역 및 소방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점 호 보 고	1. 연병장에서의 점호 때 가. 점호는 소방서 및 파출소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조정하여 실시한다. 나. 인원보고는 분대단위로 한다. 다. 인원 및 위생점검은 개인별로 한다. “보고” 당직 부관 : 200○년 ○월 ○일 제1중대 일조점호 인원보고 총원 165명, 사고 3명 현재원 162명 사고내용 : 입실 1, 환자 2, 점호준비 끝.

점호구분	일 조 점 호
	당직관 - 점호는 중대본부로부터 점호를 받고 있지 않은 분대는 열중 쉬었 당직부관 - 복창한 다음 하달 제1분대장 - 제1소대 1분대 총원 9명, 사고 1명, 현재원 8명, 번호 열외 1, 사고내용 환자 1, 점호준비 끝. 2. 내무반에서의 점호때 : 일석 점호와 동일하다.
점 호 때 실시사항	(연병장에서 실시시) 1. 인원점검 2. 건강점검 3. 애국가 제창 4. 소방서비스현장 제창 5. 각종 체조, 구보 6. 지시사항 하달 7. 기타 필요한 사항
점호구분	일 석 점 호
점호대형	 침대 또는 야전에서 침상이 없을 때에는 해당 지휘관이 대형을 조정할 수 있다.
점호보고 요 령	내무반에서의 점호때 당직부관 : 20○○년 ○월 ○일 제 1중대 일조점호 인원보고 총원 165명· 사고 4명, 현재원 161명, 사고내용 입실 1, 환자 3, 점호준비 끝. 당직관 - 점호는 1내무반부터, 점호를 받고있지 않은 내무반은 열중쉬었 당직부관 - 복창 선임분대장 - 제1내무반 일석점호 인원보고 총원 82명, 사고 2명, 현재원 80명, 번호, 열외 1명, 열외는 보고자 사고내용 입실 1, 휴가 1, 점호준비 끝.

점호구분	일	석	점	호
점 호 때	(연병장에서 실시시)			
실시사항	1. 인원점검 2. 건강점검 3. 소방서비스현장 제창 (내무반에서 실시시) 1. 인원점검 2. 건강점검 3. 개인피복 및 장비점검 4. 소방서비스현장 제창 4. 지시사항 하달 5. 기타 필요한 사항			
점호구분	취	침	점	호
점호대형				
점호요령	취침점호때의 보고요령은 일석점호 보고요령과 동일하나 번호만 생략한다.			
점 호 시	1. 인원점검 2. 건강점검 3. 관물 정돈상태 및 장비파악 4. 기타 필요한 사항			